

1450

議案處理表

件名		國家圖書館法
提案者		
提出年月日		西紀1963年 月 日
法司 委 審 查	接受	西紀1963年10月7日
	回送	西紀1963年11月5日
議決年月日		西紀1963年11月12日/2次 最高會議可決 常任委員會可決
移送年月日		西紀1963年 月 日
公布年月日 與 法律號數		西紀1963年11月26日 第1454號
備考		季 移 移 委員

9687

法案審査箋

175号(63.10.7)  
第122次(63.11.12)

法案名 國會圖書館法(案)			
審査開始日	1963.10.7.	審査完了日	1963.11.5.
審 査 委 員			
諮問委員	鮮于 濂 (3)	專門委員	韓 文 洙
"	李 根 祥	"	曹 秉 完
"	金 泰 清 Kim	"	李 廷 植
審査意見			
<p>本法案은 主審委員 責任下에 嚴格히 檢討되었음</p> <p>法制司法委員會 主審委員 鮮于 根 祥</p> <p>副審委員 曹 秉 完</p>			

9688

5/3

참 모 처 리 전  
DISPOSITION FOR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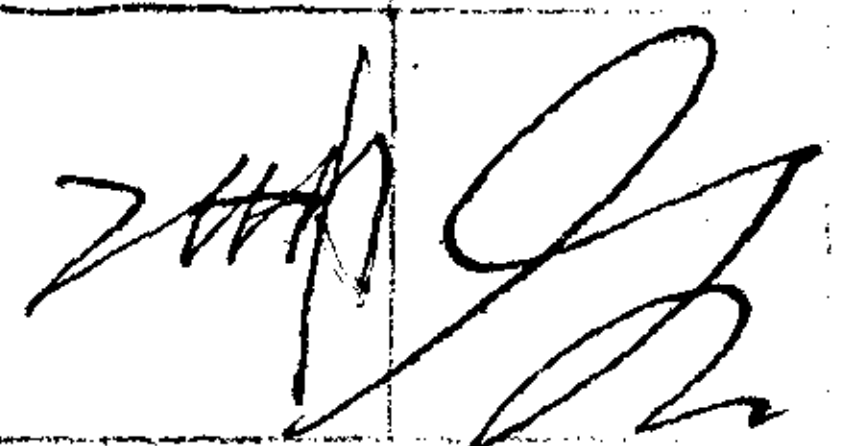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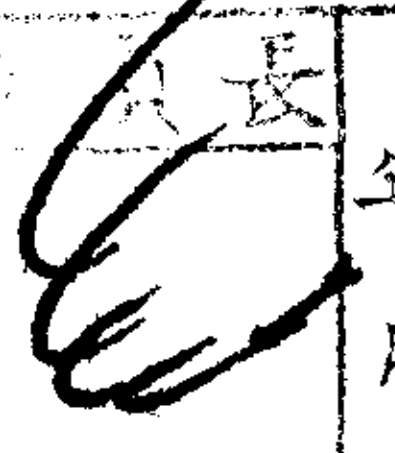
비 밀 구 분  
SECURITY CLASSIFICATION, (If any)

문서번호  
FILE NO 법사제 577 호 제 목  
SUBJECT 법안 심사의견 회신

수 신 : 운영위원장 발 신 : 법사위원장 년월일 : 63. 11. 5. 제 1 의 견  
TO FROM DATE COMMENT NO. 1

운영제 175 호 ( 63. 10. 7 ) 호 심사의견한 국회토서금법 (안) 에  
대하여 심사한 김국 원안에 동의하며 다만 법첩국 같이 리구수정은 가하여 회  
신 합니다.

유첩 심사 의견 (수정안) 1 부 끝.

擔 官 補 任	長
	
	年 月 日

위 원 장 김 국 원 전

## 國會圖書館法(案)

第1條(目的) 이法律은 國會圖書館(以下圖書館이라 한다)의 組織、職務 및 權限、公務員의 種類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任務) 圖書館은 圖書 및 其他 圖書館資料를 蒐集하여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함과 同時に, 圖書館 奉仕를 함을 그 任務로 한다.

第3條(館長) ① 圖書館에 館長 1人을 두고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되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② 館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과 同額으로 한다.

③ 館長은 圖書館事務를 統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.

④ 館長은 國會運營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圖書館管理上 必要한 諸規程을 定할수 있다.

第 4 條 ( 機 構 ) ① 圖 書 館 에 總 務 課 立 法 調 查 部 及 司 書 部 를  
둔다.

② 立 法 調 查 部 에 第 1 科 , 第 2 科 , 第 3 科 及 第 4 科 를  
둔다.

③ 司 書 部 에 圖 書 課 , 閱 覽 課 及 國 際 交 換 課 를  
둔다.

④ 各 部 課 의 分 掌 事 務 及 其 他 必 要 한 事 項 은 國 會 規 則  
에 由 來 定 한 다 .

第 5 條 ( 部 長 , 科 長 , 課 長 ) ① 立 法 調 查 部 長 은 1 級 , 司 書  
部 長 及 科 長 은 2 級 , 課 長 은 3 級 甲 類 의 一 般 職 國 家 公  
務 員 에 서 任 命 한 다 .

② 部 長 , 科 長 及 課 長 은 上 司 의 命 令 을 받 아 部 , 科 及  
課 務 를 掌 理 한 다 .

第 6 條 ( 一 般 職 公 務 員 ) ① 圖 書 館 에 館 長 外 에 一 般 職 國 家  
公 務 員 을 둔 다 .

② 前 項 의 公 務 員 의 定 員 은 議 長 이 定 한 다 .

③ 3 級 以 上 의 一 般 職 公 務 員 은 議 長 이 任 命 한 다 . 其  
他 의 公 務 員 은 事 務 總 長 이 任 命 한 다 .

국제교류 또는 공공도서관

第7條 ( 諸資料의 納入 ) ①立法活動 및, 國家政策樹立 ~~또는~~

國際交換에 必要한 圖書, 圖書館 資料 및 蒐集權限을 發行하는 諸資料等 發行日로부터 30日以内에 圖書館에 納入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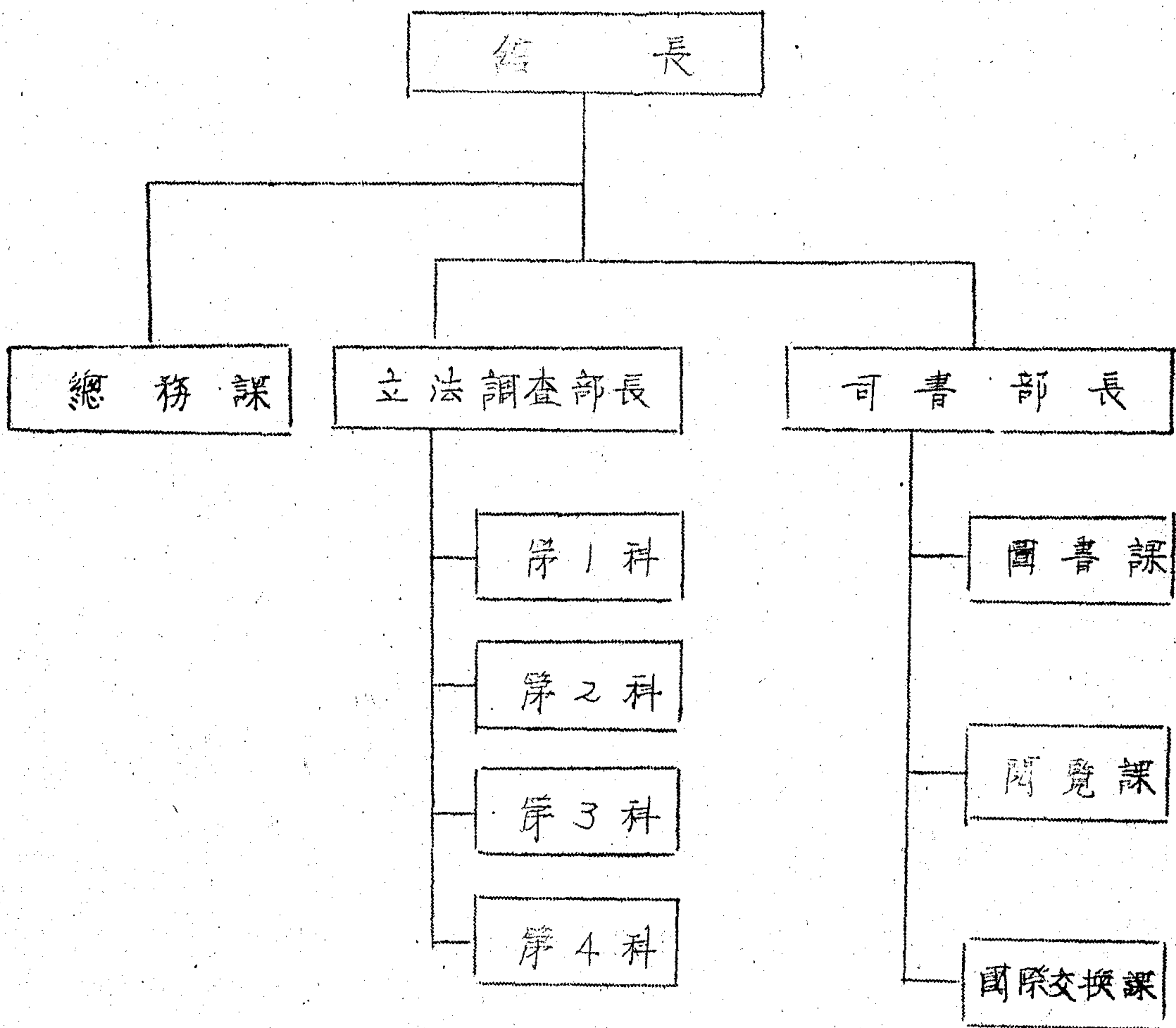
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資料 以外의 出版物은 이를 寄贈, 遺贈 또는 交換에 依하여 納入할 수 있다. 다만, 出版物을 購入할 때에는 館長은 當該 出版物에 所要한 費用에 相當한 金額을 工代金으로 支拂한다.

第8條 ( 寄贈 ) 館長은 國會運營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物品 또는 金錢의 寄贈을 받을 수 있다.

附 則

- ① 이 법은 國會法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.
- ② 이 법 施行當時의 國家再建最高會議 總務處 圖書館은 이 법에 依한 國會圖書館으로 본다.
- ③ 이 법 施行當時의 國家再建最高會議 總務處 圖書館의 機關의 公務員은 이 법에 依한 相當한 機關의 公務員으로서 繼續 職務를 行한다.

# 國會圖書館機構圖



1454

法律第

號

11 26

1903年 月 日 公布

## 國會圖書館法

第1條 (目的) 이 法은 國會圖書館  
(이하 "圖書館" 이라 한다) 의 組織  
職務 및 權限, 公務員의 種類 기타  
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 
한다.

第2條 (任務) 圖書館은 圖書 및 기  
타 圖書館資料를 蒐集하여 國會議員  
의 職務遂行에 資함과 동시에 圖書  
館 奉仕를 함을 그 任務로 한다.

第3條 (館長) ① 圖書館에 館長 1人



~\*~

을 두고,議長이國會運營委員會의  
同意를 얻어任命한다.

②館長은別定職으로한다.

③館長은圖書館事務를統理하고所  
屬公務員을指揮·監督한다.

④館長은國會運營委員會의承認을  
얻어圖書館管理上 필요한諸規程을  
정할수있다.

第4條(機構) ①圖書館에總務課·立  
法調查局과司書局을둔다.

②立法調查局에第1課·第2課·第3  
課와第4課를둔다.

③司書局에圖書課·閱覽課와國際交

換課를 둔다.

④ 各局課의 分掌事務와 기타 필요한  
事項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.

第 5 條 ( 局長 · 課長 ) ① 局長은 2 級;  
課長은 3 級 甲類인 一般職 國家公務員  
으로 任命한다.

② 局長과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 
각각 局 또는 課의 事務를 掌理한  
다.

第 6 條 ( 一般職 國家公務員 ) ① 圖書館에  
館長外에 一般職 國家公務員을 둔다.

② 前項의 公務員의 定員은 國會規則  
으로 釐한다.

③ 3級 이상 一般職國家公務員은 議長  
이 任命하며 기타의 公務員은 圖書  
館長이 任命한다.

第7條 ( 諸資料의 納入 ) ① 國家機關

또는 公共團體가 立法活動· 國家政策  
樹立 또는 國際交換에 필요한 圖書  
기타 圖書館資料를 發刊한 때에는 당  
해 機關은 發行日로부터 30日이 내  
에 그 刊行物을 圖書館에 納入하여야  
한다.

② 國家機關과 公共團體 이외의 者가  
圖書 기타 圖書館資料를 發刊한  
때에는 館長은 이를 圖書館에 納入

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館長은  
당해 出版物에 所要한 費用에 상당  
한 金額을 그 代金으로 支給한다.

第 8 條 (寄贈) 館長은 國會運營委員會  
의 承認을 얻어 物品 또는 金錢의  
寄贈을 받을 수 있다.

附 則

① 이 法은 1963年 / 2月 / 7日 부터  
施行한다.

② 이 法 施行 당시의 國家再建最高會議  
總務處圖書館은 이 法에 의한 國會圖  
書館으로 본다.

③ 이 法 施行 당시의 國家再建最高會議

總務處圖書館의 公務員은 이 : 法에 의  
한 國會圖書館公務員으로서 계속 그  
職務를 행한다.